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7
----------	-----

2021. 6. 23.(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2021년 6월 11일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학교를 추가하여 교복지원 대상 학교를 명확히 하고, 교복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포함시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학교” 를 추가함(안 제2조)
- 교복 지원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함(안 제5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홍만표)

-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에 한함)에서 각종학교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은여울중학교, 은여울고등학교, 다다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글로벌선진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등 5개 학교의 신입생 연간 160명 정도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대상을 각종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를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교복 지원은 2022학년도에 입학, 전입,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1. 2. (생략)</p> <p>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u>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u>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u>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u></p> <p>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제5조(지원대상) ① ----- --- <u>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산출근거

(단위:원,명)

구분	단가	학생수	금액	비고
2022년				
각종학교 신입생	300,000	167	50,100,000	
2023년				
각종학교 신입생	300,000	167	50,100,000	
2024년				
각종학교 신입생	300,000	167	50,100,000	
2025년				
각종학교 신입생	300,000	167	50,100,000	
2026년				
각종학교 신입생	300,000	167	50,100,000	
합계		835	2,505,000,000	

- 각종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현황 조사(학교에서 직접 신입생 모집)
 - 다다예술학교 중학교 신입생 7명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45명
 - 글로벌선진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 115명
- 2021학년도 교복 지원금 3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250,500
세 출							
교복비지원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250,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250,5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50,100	50,100	50,100	50,100	50,100	250,5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등)							